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23587 판결 [보증채무금]

---

### 재판경과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235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4. 19 선고 99나36107 판결

###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A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A 담당변호사 정BA)

【피고,피상고인】 CA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진B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4. 19. 선고 99나36107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이행기일(어음지급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채무"를 피고가 보증하는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정한 이 사건 보증약관 제3조 제2호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행태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일 뿐 아니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보증사고의 위험성과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에 따라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조합원에게 일정한 보증 수수료를 받고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가 발급된 이후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하도급공사대금 지급기일의 연장 등의 사유로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추가보증신청에 의하여 추가 수수료를 징수한 후 추가보증서를 발급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가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도래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면서 그 보증기간 즉 위험기간의 일수에 비례한 보증료만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서 발급신청자와 보증채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이행기일을 연장함으로써 보증기간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이로써 보증사고 발생의 위험이 확대된 경우에게까지 피고의 보증책임을 인정한다면 이는 피고의 보증책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것은 피고가 판매하는 보증상품의 기본적인 틀에 해당한다는 점과 채무의 이행기일의 연장으로 인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보증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교부되는 거래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약관 제3조 제2호가 고객이 거래행태를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든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약관 제3조 제2호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44829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해석을 잘못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KK건설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 중 금 55,300,170원은 원고의 KK건설에 대한 서울 ○○구 ○○동소재 ○○아파트 ○○동 ○○호의 분양대금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3. 제3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르면 되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한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교부한 어음이 이른바 '은행도 어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단순히 보관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예상하고 수수한 경우라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44829 판결,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등 참조).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같은법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피고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타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이 사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보증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이로써 피고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금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44829 판결,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위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으면서 그 만기가 보증기간 이후임에 대하여 어떤 이의를 제기하였거나 다른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없음을 전제로, 원고는 위 어음을 수령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그 만기까지 유예해 준 것이고 위 어음의 지급기일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존채무의 지급에 관한 어음 수수행위에 있어 당사자 의사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